붙임 **고시문**

◎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 2026 - 752호

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를 고시합니다.

2026 년 11 월 5일
국 가 데 이 터 처 장

---

1. 통계의 명칭 : 아산시여성통계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충청남도 아산시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694007호 [2018.11.27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6.11.30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(사 유)
작성항목 (통계표)	○ 5개 분야 62개 항목 (하위항목포함) ◦ 인구와 가족(14) ◦ 경제현황 및 일자리(14) ◦ 주거와 복지(12) ◦ 건강(9) ◦ 지역생활 만족도(12)	○ 5개 분야 53개 항목 (하위항목포함) - 삭제 8 ◦ 인구와 가족(14) ◦ 경제현황 및 일자리(10) - 삭제 4 ◦ 주거와 복지(12) ◦ 건강(9) - 삭제 2 ◦ 지역생활 만족도(12) - 삭제 2	- 정책 미활용으로 인한 통계표 삭제